

瑞山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8. 21

3. 提案理由

- 국가경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 축소하며,
- 축소개편된 기구 기능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함.

4. 主要骨子

- 기존 서산시행정기구조직을 개편 조정하여 시본청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사회건설국을 설치하고,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정책, 정보담당 업무를 통합내지 흡수하며,
-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체육진흥 업무를 흡수 조정토록함.
- 총무국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적과를 두고,

- 기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의 새마을담당 업무를 흡수,
 - 기존 시민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 병무담당 업무를 흡수
 -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
- 사회건설국에는 산업과,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두며,
- 기존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통합, 축산해양과로 명칭 변경
 -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와 기존 해양수산과의 해양오염방지담당 업무를 흡수
 - 건설과에서 기존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를 흡수하고, 지역개발담당을 신설 지하수 및 하천, 오지 및 낙도 개발사업 업무를 조정 분장,
 - 기존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 도시건축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
 - 기존 수도과는 서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합함.

5.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 현행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 3국 4담당관실 20개과의 행정기구를 2국 2담당관실 15개과로 기구 조직을 개편하여, 1국 2담당관실 5과를 축소 조정, 대국 대과 체제로 시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구는 축소되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구라고 사료되며,
- 본 행정기구 개편안 내용과 관련되는 서산시직제규칙 개정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것은,
 - 종합민원실에 유기한 복합민원 서류를 접수한 건별로 민원인 상담부터 완결처리후 교부까지 복합민원서류 처리담당 책임공무원 지정 시행대책과,
 - 현재 서산시의 도심권발전성장 추세로 보아서 많은 우량택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데 비해서 시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구획정리만을 전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획정리담당을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두고 담당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 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중 " 규정"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과 맞지 않으므로 " 규칙" 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고,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 각항중 2항,3항,4항,5항,7항,9항,11항,13항, 14항,17항,19항의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서산시직제규칙 개정시 부칙에 규정함이 타당하며,

여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의거 현행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환경사업소설치조례, 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폐지됨.
 - 이유 - 부칙도 하나의 의결로 봄(학설, 각종교재)
 - 근거 - 별도의 관련 법규와 조례는 없음.